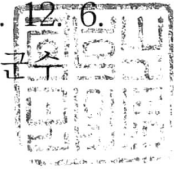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2-17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일자 : 2022. 12. 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제안이유

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사전적·확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, 상위 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 위반이므로 일부를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창작공간 전대관련 내용 변경(안 제10조제2호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2. 10. 26.~11. 15.)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·운영에 관한 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,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 정 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0조(수탁자의 의무)<br>1. (생략)<br>2.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·운영에 관한 <u>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.</u> | 제10조(수탁자의 의무)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수탁자는 창작공간 관리·운영에 관한 <u>권한을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,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.</u> |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